

결혼이주여성의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조숙정
(동아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2.1. 결혼이주와 문화변용
 - 2.2. 결혼이주여성의 위기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 3.1 연구참가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
 - 3.2. 연구참가자의 현황
 - 3.3. 분석결과
4. 정책적 및 법률적 개선방안
 - 4.1. 정책적 개선방안
 - 4.2. 법률적 개선방안
5. 결론

국문초록

결혼이주여성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에 입국 및 이주를 위한 요건들은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 및 이주 후 실생활에서 이민자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5243).

지위와 문화변용에 따른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상담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인한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적·법률적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실제 상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자발적·비자발적 '을'의 지위, 귀화한 이후에도 한국어 능력 부족, 한국인에 대한 신뢰 부족, 문화변용에 따른 한계, 위기의식의 부족 등이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위기에 대응하고, 질 높은 생활과 사회참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기능 및 사회적 지지 확립과 강화, 귀화·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 관계기관의 연대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법률적 개선방안으로서,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안정적 국적취득을 위한 국적법의 개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위기대응, 체류안정, 이민자정책, 인권침해

1. 서론

해외 이주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어·문화·인종·종교적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국가의 사회질서와 규범을 수용하며 차이와 다름으로 인한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따른 차이와 다름의 범위와 수용 등의 태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주민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주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이다(정재각 2010: 71).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원인 또한 본국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경제적 동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적 욕구는 개인적인 측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한 본국 송금을 통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오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결혼 이주를 선택하여 한국 가정의 일원으로 유입되었다. 결혼 이주는 노동 이주보다 접근이 쉬울 뿐 아니라, 체류 또한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며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구 다문화 국가와 같이 가족 단위의 유입과 국가나 민족 중심의 공동체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유입된다는 특이성을 가진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 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위한 국제결혼의 장려를 비롯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한 국제결혼 중개의 허용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조영희·임동번 2013: 50-51, 김병록 2020:12-13, 김유정 2021: 36-37). 2024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건으로 전년대비 18.3%(3천 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혼인 중 10.2%로 전년보다 1.5%p 증가하였다. 그 중 대한민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중이 74.6%(1만 5천 건)로 전년대비 22.5%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4: 13).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예를 들면, 법무부는 2015년 4월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의 무분별한 한국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고시하면서 소득기준과 함께 한국어 구사요건도 함께 고시하였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한국어 구사요건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으로 정하였고, 2024년 현재도 유효기간 내의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과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과정 이수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행복한 한국생활, 한국생활 가이드북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소형 리플릿을 발행하여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다누리 앱(App)을 홍보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대한외국인을 위한 범

죄예방 모음.zip>을 각 국가별 언어로 발행하여 다문화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모델¹⁾로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체류 외국인 대상별로 한국사회 적응 지원 서비스인 한국어교육, 상담, 통·번역 등의 세부 프로그램과 출입국과 체류관리 서비스 및 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0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 기준으로 2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이다(장익현·황민철 2022: 189).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20여 년 지나면서 그들이 가정, 사회, 직장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나아가 한국인 집단과 이주민 집단 등 새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2019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법률전문가와 연계한 상담내용을 종합하면, 가정폭력, 한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부모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상담, 이혼 후 면접교섭권, 양육비 청구에 관한 상담과 출입국, 국적신고, 귀화 및 영주권 상담, 그 외에 미등록외국인 폭행피해 상담, 손해배상, 대여금반환, 직장 내 부당한 노동(대우), 세금 등에 관한 상담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결혼이주여성이 가지는 위기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한국 사회체계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을 시작한 이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민원상황과 일반적인 생활법률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놓치고 있

1)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을 합동 발간하였다(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2020).

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법률과 민원에 대한 욕구를 제공하여 그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통합 및 정책적 차원에서 탐다운 방식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위기인식을 분석하여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적·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한국사회의 행정관리 체계 속에서 원활하게 한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논의

2.1. 결혼이주와 문화변용

2.1.1. 결혼이주(migration)의 의미

결혼과 이주는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주는 국가 간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변화의 양상이 크며,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이주는 국가 간의 이동인 동시에 가족 문화의 변화도 동반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주는 소속 그룹을 바꾸는 것이다(Albrecht 1972: 23).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옮겨가는 것으로(Eisenstadt 1954: 1), 사회체계를 옮겨가는 것(Ronzani 1980: 17)을 의미하며(정재각, 2010: 52에서 재구성) 행정과 법률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결혼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의 시장화와 지구화 현상으로 인한 거대자본의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빈부격차에 따른 대응적 반응으로 풀이되며(박혜경·이재경 2010: 34), 여성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Kofman et. al., 2001,

Sassen 2000, Schmalzbauer 2008, 박혜경·이재경 2010: 41에서 재인용). 이러한 여성 중심의 결혼이주는 타 이주민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이성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는 국가나 민족 중심의 거주공간으로 유입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현지 사회(core society) 중심문화의 구성원과 이주자 사이 즉, 민족 간 결혼으로 일어나는 결혼 동화(marital assimilation)이다(정재각 2010: 140). 결혼으로 인한 동화는 필연적으로 구조적·문화적 적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가족구성원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에게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깨고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언어와 사회적 역할을 학습해야 하며 유입국의 사회구조에 적응해야 한다. 이들은 혼인을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순간부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법체계에 편입되고, 다른 이주민과 달리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새로운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특이성을 가진다(정상우·최보선 2014: 102).

법률은 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바탕으로 이주민이 이주한 국가의 법률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동화주의, 상호주의, 다문화주의를 논하는 이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국가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유입국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이해하고 법률에 대한 이해는 유입국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2.1.2. 문화변용(acculturation)

이주민 당사자가 겪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문화변용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문화변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변용은 상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개인과 사회가 지속적인 접촉에 의해 기존의 문화양식에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이다(Redfield, Linton, & Herkovits, 1936).

John Berry(1997)의 문화변용이론(acculturation theory)에 의하면, “문화변용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 주류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행동·태도·인지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으로(류근필 2022: 239), 결혼이주여성이 주류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단일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이들의 다양한 적응형태를 이해하려는 다차원적 접근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Gordon 2012). 이 과정에서 이주민은 혼란과 혼동을 겪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소수 유색인종이 백인 주류문화 집단에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은 현재 아시아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조윤오 2010: 162).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변용이란, 단순히 한국으로의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주류사회인 한국의 사회체제와 생활방식, 가치관, 사회적 관계를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가정의 사적인 공간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측면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변화’할 것인지, 한국사회에 ‘적용’·‘거부’할 것인지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형태의 문화변용 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을 갖게 된다(John Berry 1997: 10, 이수민·문찬주 2022: 417). 첫째, 동화(assimilation)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존 모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주류집단의 사회체제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결혼이주 초기 한국 가족의 요구와 문화를 수용하고 따르려고 하는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에 동화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둘째, 분리(separation)는 본인이 지니고 있던 기존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따르고 주류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동이다. 결혼 초기에 주류사회인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으로 한국문화와 가치에 적응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노력한

만큼 성과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와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과 실망감으로 인해 기존 모국 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한국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한국생활의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통합(integration)은 주류사회의 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수용하면서 모국 문화의 정체성 또한 유지하려는 태도로, 이주민의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적인 태도는 문화변용 태도 중에서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이동은 2023: 210), 주류사회의 문화를 인정하는 통합적 태도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근필 2022: 253). 통합적 태도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 문화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좋지만,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조윤오(2010)는 통합적 태도는 겉치레에 불과하고, 주류문화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통합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주민이 한국적인 가치관과 신념 등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조윤호 2010: 163).

넷째,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이주민 본인의 정체성이나 특성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와 관계를 맺을 필요 또한 느끼지 못하는 태도이다. 즉, 이주민은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모국 집단에서도 정체성과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져 방황하는 태도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문화변용 형태이다(Swagler & Jome 2005).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남지 않고 평등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의미(민가영 2011: 84)를 가진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문화변용은 결혼이주 당사자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언어·문화적인 어려움(안윤소 2017: 366)을 겪으며, 그 속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여(이정관

2014: 313, 신영지 2013: 384) 한국사회에서 타자화 또는 주변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논문은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양상이나 그 과정, 어려움 호소 등이며, 일부는 문화변용으로 인한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정립을 위한 연구(송민애 2017: 45)들이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한 법적 측면의 위기 상황 중 문화변용적 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결혼이주 당사자에게 유용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2. 결혼이주여성의 위기

결혼이주여성의 위기에 관한 연구는 가정(족)해체(민기연 2020, 김소희 2023, 김미라·김명찬 2018, 박신규·조아영 2013), 차별, 편견, 인권(김기현 2010, 위인백 2011, 조숙정 2023), 갈등(이용재 2013, 전은희 2013, 조희원 2016), 범죄·폭력(오서연·김학범 2013, 조상현·정육상 2015, 조숙정 2024)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위기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이주 자체와 이주에 따른 변화와 적응에 따른 모든 과정을 위기로 볼 수 있다.

이주민은 주류사회에서 문화변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귀속, 포함과 배제, 위계에 관한 갈등과 충돌, 고향의 상실과 복원 등과 관련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이용일 2023: 154). 주류사회 또한 이주민의 유입은 경제적, 사회적 위계 변화에 대한 불안과 사회질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이주민에게 전가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의 결혼이주는 전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결혼이주는 여성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결혼이주를 한 이후에도 여성은 모국 가족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유입국에서 획득한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모국의 가정 내에서 기존과는 다른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유입국 사회에서는 낮은 계층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김은실·민가영 2006: 42).

또 모국의 경제적 수준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은 위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겪게 된다. 한국 사회는 경제력, 권력, 학벌,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서열화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 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국적, 인종에 따른 차별과 혐오 및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차이’가 아닌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여성과 이주민 그리고 저개발국가 출신이라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주민은 수용국인 한국 사회구성원에게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끼리 국적과 인종에 따라 차별적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모국 출신끼리도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주류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차별만이 아니라 이주민 집단에서도 국적과 인종, 경제력 정도에 따라 재서열화 되는 등 보다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 자원 없이 이주를 결정한 여성은 이주 후 수용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해결뿐 아니라 자신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결혼이주는 가장 안전한 이주의 한 방안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은 연인관계보다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취약성, 정보부족, 법적 불안정성 그리고 성적 위협 등에 대비한 파트너로 한국인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아내나 배우자를 맞이하는 한국인 남성과 다른 입장으로, 이주를 선택한 여성의 복잡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 비자는 새로운 사회체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주여성 자신의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결혼이주는 연쇄이주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파급력을 가지기도 한다(강동관 2017: 6). 결혼이주는 가족결합을 통한 연쇄이주에 따른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혼이주여성은 부모 및 형제자매를 초청하고, 그들은 단기비자로 방문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과정에서 친정식사와 장기적인 동거는 한국배우자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불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의 갈등과 보호자로 선택한 한국인 배우자가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상실감은 상당할 것이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과 가족과의 단절, 법적 문제 및 경제적 문제와 가정폭력 등은 결혼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위기에 대한 것은 유입국 측면의 견해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그들 입장에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자는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목표와 필요를 채우는 문화적 형태(patterns of cultural gratification)를 받아들이고, 지위 변화라는 재사회화와 재구성을 수용한다(정재각 2010: 130). 유입국에서는 그들의 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예방적(pro-active)’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이민정책과 사회적 지원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을 통해 그들의 위기 유형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고 본다.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연구참가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의에 대하여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서 “결혼이민자들’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정의하면, “국제결혼의 형식을 통하

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조숙정 · 조일윤 2024: 71, 김현정 2020: 64-65, 표명환 2009: 99).

3.2. 연구참가자의 현황

이 연구는 연구자가 상임이사로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드림씨티다문화공동체’에서 2021년-2022년에 걸친 2년 동안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위 법인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하고 사전예약을 통하여 사례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자들 중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고, 부산에서 5년 이상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사례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사례자를 익명 또는 사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상담내용을 연구 등에 제공 또는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및 법무사, 그 사무실의 사무장, 법학박사 등이 직접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리적 검토를 담당하였다. 사례자들은 1회의 법률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었지만, 2-3회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사례자들의 출신국은 중국 11명, 베트남 10명, 페루 2명, 필리핀 2명, 캄보디아 1명, 러시아 1명 등 총 27명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78%를 차지하였다.

<표 1> 사례자의 국가별 분포

출신국	중국	베트남	페루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합계
인원(명)	11	10	2	2	1	1	27
비율(%)	41	37	7	7	4	4	100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자 27명 중 17명이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영주권자 2명, 귀화 및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8명으로 70%가 귀화·영주권자였다.

<표 2> 사례자의 국가별 귀화·영주정도

출신국	중국	베트남	페루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합계
인원(명)	11	10	2	2	1	1	27
귀화·영주	9	7	2	0	1	0	19
비율(%)	82	70	100	0	100	0	70

이 연구의 사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법률상담을 통한 위기사유는 <표 3>과 같다.

<표 3> 사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위기사유

사례자 순번	이주 년도	출신국	나이	위기사유	비고
1	2009	중국	55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강제집행 등, 한국계 중국인으로 의사소통 원활	귀화
2	1997	중국	47	사망한 남편의 채무 등 재산관계 등 문제, 한정승인,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3	2004	베트남	39	가정폭력, 쉼터 생활, 남편의 경제적 무능, 이혼,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4	2007	중국	37	이혼 후 면접교섭권, 전문가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함	귀화
5	2014	베트남	31	가정폭력, 이혼,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 제한적	-
6	2013	베트남	47	가정폭력, 이혼,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7	1994	중국	3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계 중국인으로 의사소통 원활	귀화

사례자 순번	이주 년도	출신국	나이	위기사유	비고
8	2002	러시아	52	가정폭력,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 명령, 체류기간 연장허가, 범칙금, 의사소통 전혀 불가, 딸이 대신 상담	-
9	2014	베트남	32	사망한 남편의 대여금 반환청구, 겨우 의사소통가능	귀화
10	2000	페루	49	다단계 피해자, 겨우 의사소통 가능	귀화
11	2001	페루	45	다단계 피해자, 겨우 의사소통 가능	귀화
12	2006	중국	42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함	귀화
13	2007	베트남	41	대여금에 대한 민사반환청구 및 형사처벌,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14	2013	베트남	36	베트남으로부터의 택배로 인한 형사처벌 및 출입국문제, 의사소통 원활	영주권
15	2013	필리핀	40	부당하게 수령한 실업급여반환,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 부분적으로 손질받짓	-
16	2013	캄보디아	30	한국배우자가 생활비 미지급, 성격차이, 부부싸움시 지체장애를 가진 자녀 폭행(가정폭력), 이혼, 겨우 의사소통	귀화
17	2011	필리핀	45	자녀학대, 이혼, 의사소통 제한적	-
18	1994	중국	52	가정폭력, 이혼, 제3자와 동거,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19	2008	중국	53	배우자가출, 이혼, 의사소통 제한적	영주권
20	2005	중국	58	이혼 후 위자료 등 미지급, 전남편이 모든 재산을 동생 명의로 해 두었고, 보복이 두려워 법적 조치 어려움, 의사소통 제한적	-
21	2005	중국	40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이혼 가능여부, 이혼 후 재산분할 등 문제, 의사소통 원활	귀화
22	2016	중국	44	한국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별거 중 이혼 여부, 한부모가족지원 가능여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 가능	-

사례자 순번	이주 년도	출신국	나이	위기사유	비고
23	2018	베트남	35	이혼, 친생부인허가 관련,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24	2007	베트남	36	베트남출신 사이의 계급 및 대여금, 공익법무관 통해 소송 진행 중, 의사소통 제한적	-
25	2005	중국	38	보유중인 아파트 임대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문제,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26	2008	베트남	33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으로 생각하여 대응을 하지 않아 이혼소송의 확정 후 면접교섭 및 재산분할 문제 상담, 경우 의사소통 가능	-
27	2010	베트남	32	남편이 사기를 당해 개인파산 진행, 본인 명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의사소통 제한적	귀화

3.3. 분석결과

3.3.1. 자발적·비자발적 ‘을’의 지위

여성의 결혼이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류사회의 배우자에게 편승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친정가족들은 주류사회의 배우자인 한국 남성을 보호자로 삼아 한국사회에 장·단기 간 체류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보호자로부터 차별과 폭행 등을 당하고 있지만, 대항하여 문제 삼기보다는 참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성폭행과 가정폭력, 폭언에 시달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원하거나 친정부모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어서 참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이는 결혼이주 당

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부당하고 부정한 것을 참는 자발적·비자발적 ‘을’이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한 사례자 3, 6, 18, 21 등의 경우에는 이미 귀화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혼 등으로 인한 혼인단절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혼 및 법률적 해결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사례자 5, 8, 17, 22 등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출입국 및 체류기간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소극적이거나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3.3.2. 귀화자의 언어적 한계

법률상담은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례자와 상담자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사례자들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는 가능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지만, 법률상담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법률상담과 관련된 내용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자들이 통역을 담당해 주면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자도 한국의 법률용어 또는 정서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어가 서투르면서 통역자도 요구하지 않은 채 상담을 받으려고 하거나, 통역자가 있는 경우에도 통역자에게 무조건 무료로 통역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언어적 한계가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자의 의사소통 정도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활한 소통은 4명, 기본적 소통은 가능하나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제한적 소통은 13명, 겨우 소통하는 정도는 6명, 한국어 강사나 통역자의 도움을 받은 전문가 활용은 3명이며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1명이다.

특히 귀화·영주권을 가진 사례자의 21%만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47%는 기본적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20%는 겨우 소통이 가능한 정도였다. 특히

15.7%는 통역이 필요했다. 즉, 귀화는 하였지만 상담 시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귀화를 하였지만 한국어 정도가 낮은 것은 귀화시험에 있어서의 문제점인지, 사례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것인지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4〉 사례자의 의사소통정도

출신국	중국	베트남	페루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합계
원활	3(3/0)	1(1/0)	-	-	-	-	4(4/0)
제한적 소통	5(4/1)	7(5/2)	-	1(0/1)	-	-	13(9/4)
겨우소통	-	2(1/1)	2(2/0)	1(0/1)	1(1/0)	-	6(4/2)
전문가	3(2/1)	-	-	-	-	-	3(2/1)
소통불가	-	-	-	-	-	1(0/1)	1(0/1)
합	11(9/2)	10(8/2)	2(2/0)	2(0/2)	1(1/0)	1(0/1)	27(19/7)

*()안의 숫자는 (귀화·영주자 수/ 국적미취득자 수)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상담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증거 등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사례자 증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원하지만, 가정폭력의 증거로써 상담 시 가져온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라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서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자 중에는 가정(가족)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배우자 비자인 F-6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3. 신뢰의 부족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원한다면 거주지 인근에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이 한 곳 이상이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법률상담에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센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곳에 상담 쇼핑을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담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거나 무료 여부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며, 상담자의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해결보다 무료 서비스 기관만 찾아다니거나 상담 내용만 비교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자 20의 경우에는 전남편의 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이 법률상담을 받는 것 자체도 알리기 꺼려하였다.

또한 그들은 한국인 상담자들이 한국인에게 유리한 상담을 해 준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잘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오라'고 하는 등으로 당사자의 절실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한다고 생각하였다. 법률상담을 찾을 정도이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힘들음을 상담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로 내담자로서는 섭섭함과 함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상담을 한 사례자 중에는 상담자가 상담사항을 관련 기관에 고발한다고 생각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자 27은 남편이 사기 피해로 인하여 개인 파산을 진행한 사례인데, 남편이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순수한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기초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내재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3.3.4. 문화변용에 따른 한계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의 정서적·문화적·제도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입국인 한국의 사회체제와 법제도적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주민이 유입국에 적응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문화변용에 따른 태도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문제발생 시 해결을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유입국의 사회체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출신국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이주민 개인의 피해로 남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쟁을 벌이는 사례자도 있어서 상대방을 지치고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사례자 1의 경우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은 자유로웠으나, 본국인 중국제도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한국제도를 설명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제도만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이혼 관련 사례자 중에는 본인 출신국에서는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절차 등을 상담하지만, 한국 법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례자도 있었다.

사례자 26의 경우에는 허위의 이혼 소장으로 인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대응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었다.

3.3.5. 위기의식의 부족

본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위기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하였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문제인식과 본인이 억울하다는 자기연민과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자 1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은 하였기 때문에, 사례자 8은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유기 등의 사유로, 사례자 14는 자신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택배를 받았을 뿐 이었다는 사유로, 사례자 21은 생활비미지급이라는 사유 등 자신이 피해자라는 전제하에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또한 법률상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사건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자 중에는 자신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언급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문제해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행동은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태도가 안타깝다.

사례자 20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례자 27은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으로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법률적 해결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초기 상담이후 길라잡이를 제시해 주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문제가 커지고 난 이후에 재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흔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로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 물론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하러 올 정도이면 문제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일 것이고, 상담을 통해 방법론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서 문제해결이 안되고 가장 나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 문제가 된 사례자들인 3, 5, 6, 8, 16, 17, 18, 20, 21 등은 가정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사례자 5, 12, 16, 21, 22 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두려움으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는 상담을 했으니 어떻게 좀 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감을 가지는 사례자도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무료법률 상담을 해 주는 상담자나 기관에서 본인의 사건을 내 일처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으로, 만약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일이다.

사례자 8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하여 출국명령을 받았고, 범칙금 납부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상담을 하였던바, 연구자가 소속된 법인에서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3.3.6. 무분별한 지원에 따른 문제발견

사례자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은 전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담은 당연히 무료이고, 문서작성, 소송 진행 등도 무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변호사만 찾는 경우가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요건이 되는 자에 한해서 국선변호사 또는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지 모두에게 무료 변론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일반 변호사 중에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거나 아주 싸게 해 주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례도 있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는 사례자도 있다.

실제로 사례자 27의 경우에는 가족센터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었으나 가족센터에서 무료변론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담을 받으러 왔으며 무료변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무료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다른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확인한 후에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해결할 것이라고 상담을 받

다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과 아픈 가족 등의 사연을 말하며 무료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례자도 있다. 통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통역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다 해 주기를 바라는 사례자가 있는가 하면, 통역 지원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통역을 요구하기도 한다. 통역 봉사를 해 주는 같은 이주민조차 비판할 정도로 무료 지원이 낡은 병폐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례자 4, 12, 22, 26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상담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연히 통역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준비 없이 상담에 임하기도 하였다.

4. 정책적 및 법률적 개선방안

4.1. 정책적 개선방안

4.1.1.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과 사회적 지지 확립 및 강화의 필요성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기존의 방식처럼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한 자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보다 넓은 차원에서 매우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류사회인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집중하지만, 이주민으로서 느끼는 한계가 있다. 한국인 남편의 배려와 지원이 우선 된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높이려는 강한 욕구를 뒷받침해 줄 조언자가 필요하다. 이때 모국 출신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수집과 함께 상호 지지와 격려를 보내게 된다면 한국 생활이 힘들지만,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네트

워크를 통해 지지를 강화하게 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Hovey & Magaña 2002; Rotenberg et al 2000, 전해경 2024: 299에서 재인용).

따라서 모국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습득 및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개입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입국 초기의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출신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준다거나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운영되는 이주민 네트워크를 공적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각 시·구마다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혹은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공식화하여 의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4.1.2. 사회생활용 한국어습득의 교육을 위한 정책실현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즉, 결혼이민비자(F-6) 발급을 위한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원 및 세종학당의 수료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의 성적증명서, 해당국가에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이외에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다.²⁾ 위와 같은 각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과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어능력만으로는 가정 및 가족생활이 아닌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사례에서도 이로 인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입증서류 등

2)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2024년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서류 안내. https://overseas.mofa.go.kr/ir-ko/brd/m_11392/view.do?seq=1284223&page=1(2024. 10. 15. 최종 확인)

의 입수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사회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이 직업과 관련된 경력, 또는 개인적으로 풍부한 생애 경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특히 가족과 불편한 또는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대한민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인 배우자 이외에 다른 한국인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병원이나 법원 등 관공서를 이용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귀화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21%만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79%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이 귀화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과 지역사회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의 결핍·부족, 특히 자연학습이 불가능에 가까운 읽기, 쓰기 능력의 결핍을 메워줄 사회공동체의 태도와 사회변혁이 요구된다.

4.2. 법률적 개선방안

4.2.1.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³⁾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⁴⁾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을 위한 2년 동안의 체류자격은 신원

3)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보증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좌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⁵⁾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없이도 체류자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혼인파탄의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⁶⁾에서 “혼인파탄의 경우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5) 우리나라는 신원보증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12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2011년에 문서 제출은 없어진 게 맞다”면서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신청할 때 남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남편이 함께 오지 않을 경우 면접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뉴스1 “이주여성 10명 중 4명 맞고사는 현실… 신원보증폐지 무용지물”, 2019. 7. 9.)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3666195> (2024. 10. 15. 최종 검색).

- 6)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 (가)목]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은 1회에 3년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 그 체류자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체류를

사유'를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으면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와 결정을 보다 존중하여 혼인해소권 행사를 보다 완화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혼인해소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강서영 2024: 118).

한편, 현실적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결혼기간 및 양육하는 자녀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비록 한국인 배우자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기간이 짧거나 양육하는 자녀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체류자격이 허용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1: 54). 혼인단절된 결혼이주여성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체류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비 등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록 생활비 등의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일정한 제한을 가하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4.2.2. 안정적 국적취득을 위한 국적법의 개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⁷⁾ 및 제4호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허용하는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7)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8)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즉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국의 언어·문화·제도 등에 미숙하고, 경제적·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소송을 통한 판결문,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이혼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언어적·경제적·인적 등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2024년도 상담자 중에는 2021년도에 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소장을 받아 한국인 배우자에게 물었으나 별 것 아니라는 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이혼이 확정된 사례도 있었다.

가정폭력의 입증자료로서의 진단서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발급을 하지 못하거나 언어의 문제로 진료 시에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여 진단서에 기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1: 52-53). 이러한 경우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4.2.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에서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실효성 없는 장식적 법률로써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이승우 2009: 각주 24, 정기선 외 2011: 109, 장정은 2012: 3, 손영기 2020, 176 등).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생활에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하여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자녀들 또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또는 국적취득을 위한 목적의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한 한국어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귀화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국민과 함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환경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4. 10. 4. 고동진 의원 등 15인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6조의2⁹⁾를 신설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일본국민과 함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힘쓰고, 일본에 대한

9) 제6조의2(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생활 정착 교육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19년에 ‘일본어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¹⁰⁾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연구자가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상담한 결과로써 사례자들의 상황과 사례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에 따라 정책적 및 법률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여 왔다. 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목적의 이주자들에 비하여 보다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국적 취득도 수월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률적 지원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처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의 기능 및 법률의 효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최윤철 2016: 506).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현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기 가장 쉬운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올바르게 차별받지 않는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모국 출신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거나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이주민 네트워크를 공적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네트워크 기능 및 사회적 지지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귀화한 이후에도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용 한국어 습득의 교육을 위

10) 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2019년 6월 28일 공포·시행)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하여 한국배우자의 신원보증 없이도 체류자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한, 혼인 단절로 인한 일시적인 체류기간 동안에도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국적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원만하고 원활한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 습득을 위한 환경정비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인 입장에서 예측하고 주도한 준비된 자료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것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한국인 연구자와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서도 다르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인지한 위기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있으며, 이 연구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주화 과정에 부합한 정책적 법률적 개선방안을 후속연구로 꾸준히 제안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관(2017). 가족이민제도의 문제점: 결혼이민제도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8.
- 강서영(2024).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헌법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6(1), 107-132쪽.
- 김기현(2010). 국제결혼 다문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방안, <인권복지연구> 0(7), 1-37쪽.
- 김미라·김명찬(2018) 가족해체 위기를 겪은 다문화아동의 집단상담경험에 대한 상

- 담자의 자문화기술지, <복지상담교육연구> 7(2), 121-146쪽.
- 김병록(2020). 이민정책의 법적·헌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31(2), 1-48쪽.
- 김소희(2023). 가족해체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과 정체성 협상, <Crisisonomy> 19(8), 151-168쪽.
- 김유정(2021).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적개선 방안, <강원법학> 63(0), 35-85쪽.
- 김은실·민가영(2006).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주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논집> 23(1), 35-72쪽.
- 김현정(2020).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권리보호, <법학논총> 44(4), 63-98쪽.
- 류근필(2022). 다문화가정의 문화변용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능력과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4), 237-258쪽.
- 민가영(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88-104쪽.
- 민기연·이영선(202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해체 경험, <다문화사회연구> 13(2), 143-174쪽.
- 박신규·조아영(2013). 다문화가족 해체와 지원방안, <한국이민학> 4(2), 27-50쪽.
- 박혜경·이재경(2010). 탈빈곤 전략으로서 이주결혼의 여성-한국의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4), 33-62쪽.
- 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2020).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 손영기(2020).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75, 170-194쪽.
- 송민애(2017).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상호문화변용, <다문화와 평화> 11(1), 45-79쪽.
- 신영지(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한국어 문학교육의 가능성 모색, <반교어문연구> 35, 379-408쪽.
- 오세연·김학범(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원인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2),
- 위인백(2011).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317-327쪽.
- 이동은(202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태도와 생활만족도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6(3), 185-213쪽.
- 이수민·문찬주(2022). 다문화 학부모의 문화적응 유형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8(4), 415-438쪽.
- 이승우(2009).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적 소고, <가족법연구> 23(3), 215-238쪽.
- 이용일(2023). 독일연방공화국의 '이주민 위기'와 '독일적 불안'-독일 극우주의와 정체

- 성 정치-,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0(108), 149-180쪽.
- 이용재(2013). 다문화사회 갈등에 대한 지방자치의 대응 : 주민의 지위와 실질적 자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5(3), 35-55쪽.
- 이정관(2014).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돌봄, <기독교교육논총> 38, 307-329쪽.
- 장익현 · 황민철(2022). 델파이(Delphi) 분석을 통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협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0(10), 183-212쪽.
- 장정은(20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관(官)주도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Ewha Law Review> 2(1), 1-25쪽.
- 전은희(2013). 국제결혼가정 내 갈등에 대한 질적 사례 탐구 - 캐나다인 결혼이주민 남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 <교육사회학연구> 23(3), 201-238쪽.
- 전혜경(2024).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부애착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6(0), 295-318쪽.
- 정기선 · 이선미 · 황필규 외(2011).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서울:백산서당.
- 정상우 · 최보선(201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7(3), 101-124쪽.
- 정재각(2010). 이주정책론. 도서출판 인간사랑.
- 조상현 · 정육상(2015).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1(6), 163-181쪽.
- 조숙정(2023). 다문화가정'용어에 내재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3(0), 175-213쪽.
- 조숙정 · 조일윤(202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요인과 법적 제재, <동아법학> 0(103), 67-95쪽.
- 조윤오(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159-183쪽.
- 조영희 · 임동변(2013). 한국 국제결혼의 사회적 쟁점과 법제도 분석:결혼의 성립과 해체단계를 중심으로,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IOM이민정책연구원.
- 조희원(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와 사회통합, <분쟁해결연구> 14(3), 163-189쪽.
- 최윤철(2016).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일감법학> 33, 505-532쪽.
- 통계청 보도자료(2024).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 3. 19.
- 표명환(2009).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3), 97-120쪽.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1). 다문화가정의 이혼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1. 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Gordon, B. P. (2012). Experiences of Acculturation, Ethnic Identity, and Well-being among Jama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Humanities Review*, 3, 4-18.
- Swagler, M. A. & Jome, L. M. (2005).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Acculturation on the Adkistment of North American Sojourners in Twaiw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527-536.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필자 소개

성 명 조숙정
소 속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25(부민동2가)
전자우편 susuhao@naver.com

Abstract

A Study on Policy Proposals to Respond to the Crisis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 Suk-jeong
(Dong-A University)

Marriage migrant women face various issues in their daily lives. Even if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entry and immigration to Korea, they encounter many problems in real life related to their immigrant status and cultural adaptation after entry and immig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practical model for providing policy and legal services for crisis manage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face in real life, based on actual consultation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with the assistance of legal experts. In actual consultations, marriage migrant women identified practical problems such as voluntary and involuntary status, lack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ven after naturalization, lack of trust in Koreans, limitations due to cultural adaptation, and lack of crisis aware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help marriage migrant women respond to crises and achieve a high quality of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First, a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network functions and social support, implement policies to enha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after acquiring naturalization or permanent residency,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Second, as legal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o ensure stable residency, improve the Nationality Act for stabl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improv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Key words] Marriage Migrant Women, Crisis Response, Residency Stability, Human Rights Violation

투고일 2024. 10. 28 / 심사일 2024. 11. 22 / 게재확정일 2024. 11. 28

